

##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이호수

주 소 :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69-4번지

나. 소개의원 : 김상택 의원

다. 접수일자 : 1999. 2. 27

라. 회부일자 : 1999. 2. 27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3. 5) 상정 및 의결

## 2. 청원요지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오쇠리지역이 항공기 소음피해 1종지역으로 결정되고 서울지방 항공청이 동지역을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지역의 세입자들에 이주대책이 미진하여
-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보금자리(임대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완공시까지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임.

## 3. 취지설명요지(취지설명 : 김상택 의원)

- 1987년 4월 10일 오쇠동이 항공기소음피해 1종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가 협약하여 오쇠동 이주단지가 결정되었으며
- 가옥주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여 부천시와 항공청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또한 동지역의 잔류세입자 중 50%는 10년 이상 동지역에 거주한 자로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하여 불편한 생활을 하였으며
- 80% 이상은 생활능력이 없어 서울지방항공청이 재시한 주거비용으로는 이주할 형편이 안 돼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하는 청원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쇠리세입자대표와 청원소개의원의 내용이 맞는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약 120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청원내용이 사실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결 못 한 이유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업은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임. 세입자 대책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한 사항이며 부천시에서는 작동이주단지조성사업만 위탁으로 추진하였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쇠리세입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 기간인 2000년 말 완공을 위하여 오쇠리 주민을 이주토록 하고 있으나</li> </ul>  |

|                               |  |
|-------------------------------|--|
| ○ 동청원과 관련된 규정은?               | ○ 오쇠리세입자 이주대책인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 임대아파트 입주는 2002년 중순으로 되어 있어  |
| ○ 오쇠리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 ○ 동지역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입주시까지 가 이주단지를 조성토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
| ○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청원을 검토한 적이 있 는지? | ○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임.   |
|                               | ○ 공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3개월분의 주거대체비 및 실 이사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음. |
|                               | ○ 가이주단지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음. 주민과 부천시, 부천시의회가 다시 건의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오쇠동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 의견서 1부. 끝

## 의 견 서

의안번호

제 116 호

부천시의회

| 건 명     |             | 오쇠동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 |                                      |
|---------|-------------|--------------------|--------------------------------------|
| 청 원 인   | 주 소         |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69-4  |                                      |
|         | 성 명         | 이호수                |                                      |
| 소 개 의 원 | 김상태 의원      |                    |                                      |
| 소개년월일   | 1999. 2. 26 | 처리년월일              |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br>제3차 본회의(99. 3. 9)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오쇠리 지역이 항공기소음피해 1종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 지방항공청이 동지역을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서울지방공청과 부천시 협의로 오정구 작동 46번지 일원에 오쇠리 지역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오쇠리 지역 건축주 및 세입자 1,000여 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이 대두되어 98. 3. 31일 268세대의 전몰소유주에 대해

서는 이주가 원만히 추진되었으나, 세입자 700여 세대 중 영구임대아파트 기이 입주자 및 주거대책비 보상 후 이주한 세입자를 제외한 잔여 120여 세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잔여 세입자들 중 대부분은 동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항공기 소음과 추락의 위협을 감수하고 생활을 하였으며, 이 중 80% 이상은 관련규정에 의한 이주비용으로는 이주를 할 수 없는 생활능력이 어려운 주민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공공의 개발사업이라면 공공사업이 다수의 시민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항공기 소음의 직접 피해자인 오쇠리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도 필요한 사항임.

또한, 부천시와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물리적 해석 적용보다는 오쇠리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배려한 동법의 해석 적용도 필요하며 오쇠리 세입자들의 2002년 상동택지개발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 전까지 현위치거주, 가이주단지 조성, 오쇠리 21통지역 임시주거지역 조성 등 요구사항은 매우 타당성이 있으므로 동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로 장기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한 주민들을 위하고 이들이 부천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현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1999년 3월 9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